

의안번호	2202085
의 퇴 인	이해식 의원
회 답 일	2024.08.08.
추계번호	24C22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교육재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교육재정) 안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중
 - － 동 사업은 한 끼 당 정부가 천원을 부담하고, 학생 본인이 천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임

[표 1] 천원의 아침밥 수혜인원수

구분	'17 (시범)	'18	'19	'20	'21	'22	'23	'24	
								기존	확대
지원규모(만명)	14	27	37	12	35	49	233	450	450
예산(백만원)	240	250	400	600	500	500	2,501	4,846	9,348
지원단가(원)	240	5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표 2] 천원의 아침밥 사업실시 후 연도별 예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
본예산	240	250	420	309	500	570	778
최종예산	240	250	420	309	500	570	2,501
집행액	240	250	420	309	445	570	2,501

- 향후 개정안에 따라 학생 복지 향상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 현행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원 대상의 수와 지원 횟수,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¹⁾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2024년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등교육’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점심이 포함된 일률적인 주중의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어 이의 단가 등을 준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